

수협 자체 채무조정제도 안내

■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요청대상

■ 대상자

- 계좌별 대출원금(약정액)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능한 경우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등

■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 요청방법 및 관련서류

■ 요청방법

- 영업점 신청 : 영업점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

■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1. 프리워크아웃 또는 워크아웃 신청서(채무조정안*포함)
* 단,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
2.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3.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4.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 등

□ 채무조정 지원내용 ⇨ 조건별 지원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니 거래 영업점으로 개별 문의바람

채무조정 내용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조정	채무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금 또는 미납 일부이자 ▶ 최장 3년이내 ▶ 유예기간 중 정상이자 부과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장 20년 이내(대환) *담보 20년, 신용 8년 또는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이자율의 최소 2%p이상 인하 가능 	<p>(조건 충족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70%범위 원금 감면 ▶ 연체이자, 이자 감면

□ 채무조정 절차

①요청	②심사 및 결과통지	③동의	④채무조정 약정서 작성	⑤합의
(채무자) 수협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수협)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단, 외부로부터 의견제출,자문 등을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10영업일이내)	(채무자) 수협이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수협)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약정서를 작성합니다	(채무자) 약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회생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희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